P - 117 - 2012

화학보호의의 선정, 사용 및 유지에 관한 기술지침

2012. 8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O 작성자: 매경안전환경연구원 이 영순
- O 제 · 개정 경과
  - 2012년 7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O 관련 규격 및 자료
  - BS 7184, "Selection, use and maintenacce of chemical protective clothing-Guidance", BSI, 2001
- O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: 2012년 8월 27일

제 정 자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P - 117 - 2012

# 화학보호의의 선정, 사용 및 유지에 관한 기술지침

## 1. 목적

작업장에 유해 위험한 화학물질의 노출을 경감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물질이 근로자의 인체에 접촉 또는 노출이 우려될 때 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의 인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화학보호의의 선정, 사용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을 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
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고체나 액체 또는 기체상태의 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 신체(피부)를 보호하기 위한 화학보호의의 적절한 선정, 사용, 유지관리에 적용한다. 안면, 눈, 발이나 손 보호를 위한 보호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
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통기성 재질"이라 함은 기체가 통과할 수 있는 공극 또는 틈새를 가진 재질을 말한다.
  - (나) "화학침투 경과시간 (Breakthrough time)"이라 함은 재질의 한 표면에 화학물질을 작용하였을 때 작용한 물질이 그 이면으로 침투 또는 투과하는데 걸리는 시간, 즉 물질의 접촉 후 그 이면에 화학물질이 존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.
  - (다) "화학적 위험요인 (Chemical hazard)"이라 함은 화학물질이 인체의 건강에 유해 또는 손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잠재요인을 말한다.
  - (라) "화학보호의 (Chemical protective clothing)"라 함은 화학물질의 누출 또는 접 촉에 대비한 피부 보호를 위하여 착용하는 의복(Garment)의 조합 또는 집합체를 말한다.
  - (마) "열화 (Degradation)"라 함은 화학물질과 접촉하여 재료의 하나 이상의 물리적 인 특성이 부정적(Deleterious)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.

#### P - 117 - 2012

- (바) "의복 (Garment)"이라 함은 단일 또는 다중 층으로 구성된 보호의의 단품을 말한다.
- (사) "가스기밀 화학보호의"이라 함은 가스로 내압시험(시험방법: BS EN 464)을 실시할 때 누설이 일어나지 않는 화학보호의를 말한다.
- (아) "사용제한 화학보호의"이라 함은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는 화학보호의, 즉 화학적으로 오염이 되거나 빨래가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해야 하는 보호의를 말한다.
- (자) "투과 (Penetration)"라 함은 다공성 재료, 이음매, 핀홀 등을 통하여 분자보다 큰 규모로 화학물질이 이동하는 과정을 말한다.
- (차) "침투 (Permeation)"라 함은 화학물질이 재질을 통하여 분자규모로 이동하는 과정을 말한다.
- (카) "개인보호구"라 함은 화학보호의를 포함한 머리 보호구, 눈 보호구, 호흡용 보호구, 다른 형태와 같은 개인 보호구를 말한다.
- (타) "재사용 화학보호의"라 함은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세정 후 재사용할 수 있는 화학보호의를 말한다.
- (2)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 4. 의복의 재질 선정

적절한 화학보호의를 선정하려면 먼저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대상 위험에 대한 사항, 즉 화학적 위험의 특성,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노출수준, 근로자가 작업해야 할 작업 기간 및 작업환경 등을 조사하여 이들에 적합한 보호의를 선정하여야 한다.

## 4.1 재질 선정

#### 4.1.1 일반사항

#### P - 117 - 2012

- (1) 의복의 성능 및 당해 업무에 대한 적합성은 제조에 사용되는 재질의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보호의를 제작하는 방법과도 관계가 크다.
- (2) 화학물질 보호섬유는 방직포, 부직포, 부직적층(라미네이트), 코팅섬유, 필름, 고무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. 그러나 이들을 제조성능지표로 나타내기는 재료의 조합이나 변수가 다양하여 쉽지 않다.
- (3) 보호의의 재질에 관한 성능평가는 국내외 관련 규격에 근거하여 제조자가 작성한 성능자료에 따라 실시한다.

# 4.1.2 화학적 보호

## (1) 일반사항

- (가) 유명한 회사의 잘 알려진 재질이라고 하여 요구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보호수준을 가질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되며, 섬유의 무게나 두께가 보호 능력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서도 안 된다.
- (나) 화학보호의를 인증하거나 관리하는 자(이하 관리자라 한다)는 의복에 사용된 특정 재질이 요구되는 위험물질에 대한 보호성능 시험을 실시하여 측정된 보호수준이 제안된 업무에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.
- (다) 제조자는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보호의의 재질에 관한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#### (2) 화학 침투

- (가) 화학침투 경과시간은 순수한 화학물질을 섬유의 외피에 연속적으로 접촉시키어 내부까지 침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측정하여야 한다.
- (나) 화학침투 경과시간에 의하여 의복의 등급을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.
  - ① 등급 1(Class 1) > 10분
  - ② 등급 2(Class 2) > 30분
  - ③ 등급 3(Class 3) > 60분
  - ④ 등급 4(Class 4) > 120분
  - ⑤ 등급 5(Class 5) > 240분
  - ⑥ 등급 6(Class 6) > 480분

#### P - 117 - 2012

#### (3) 화학 투과

- (가) 투과량은 화학물질을 의복의 외부에 떨어뜨려 내부로 투과되는 양을 측정하여 정하여야 한다.
- (나) 화학보호의의 재질은 투과시험을 실시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최상의 보호성 능을 가지는 등급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(다) 고체입자를 방호하기 위한 보호의는 위와 다른 실무적인 시험(Test)으로 평가 하여야 한다.

## (4) 내구성 및 견고성

- (가) 관리자는 의복의 재질이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견고성 및 내구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, 필요로 하는 의복의 형태와 관계되는 국내외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. 이때 사용된 재질의 두께 또는 무게를 성능척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.
- (나) 제조자는 재질시험에서 얻은 각종 상세정보를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#### (5) 재사용 및 한계수명(Limited life)

- (가) 보호의의 재질은 한계수명 또는 재사용용으로 구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.
- (나) 한계수명용 재질은 비록 화학물질로 오염되지 않았을 경우 1회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강한 재질이라고 하여도 1회만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설계해야 한다.
- (다) 제조사의 설명서에는 의복을 세정하기 위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.

#### (6) 편의성과 가동성

- (가) 관리자는 의복의 재질이 목표수준의 화학적 물리적 방호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때, 착용자의 가동성과 편의성에 대하여 사용된 재질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(나) 재질을 선정할 때 동일한 화학적 물리적 방호수준을 가진 두 종류의 옷감이 있다면 보다 가볍고 착용하기 편리한 옷감을 사용하도록 한다.

#### (7) 공기 침투성

독성이 강한 화학물질 등을 방호하기 위한 고도수준의 화학보호의는 공기가 침

#### P - 117 - 2012

투할 수 없는 불침투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.

#### (8) 수증기 전달

- (가) 사용자의 편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증기(땀)를 이동하게 하는 재질의 보호의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.
- (나) 공기 침투재질과 함께 수증기 전달재질은 고도의 화학보호의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.

## 4.2 선정조건

- (1) 개인보호구로 지정된 모든 화학보호의는 CE마크 등을 획득하여야 한다.
- (2) 보호의의 의복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.
  - (가) 의복의 형태는 사용목적에 적합해야 한다.
  - (나) 의복의 재질은 작업환경 및 절차에 의하여 요구하는 기간 동안 화학물질과 접촉했을 때 이를 보호해야 하고 오염의 확산을 최소화해야 한다.
  - (다) 규격은 착용자에 적합해야 한다.
  - (라) 의복은 새것이라 하여도 보관 또는 운송 중에 손상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손 상이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.
  - (마) 의복은 사용되는 장구 또는 다른 의상과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.
- (3) 보호의를 착용해야 하는 사람과 해당공정에 관련이 있는 사람은 선정된 보호의를 사용하기 전에 보호의의 성능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.
- (4) 보호의를 착용해야 하는 공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필요한 지원시스템(예; 탈오염 시설, 기록유지 시스템, 폐기 처리) 및 그 제공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. 이러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준은 의복의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.
- (5) 생리적(열 스트레스) 보호
  - (가) 고도의 물리적 활동을 포함하는 작업기간은 정의된 최대 시간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휴지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. 이러한 사항이 가능하지 않다면 환기를 위 한 공기의 외부 공급이 가능한 보호의를 사용하여야 한다.

# P - 117 - 2012

(나) 낮은 수준의 방호의 경우에는 수증기 침투 또는 통기가 가능한 의복을 사용할 수 있다.

# 5. 사용 및 교육·훈련

# 5.1 사용설명서

- (1) 보호의의 제조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.
  - (가) 제조자 상호 및 대표자 이름
  - (나) 제조 년, 월
  - (다) 모델 번호
  - (라) 제품의 규격(치수)
  - (마) 보호의를 시험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명(화학물질 명 및 조성농도 포함)
  - (바) 모든 시험성적 수준
  - (사) 노화가 진행되는 의복의 기대수명
  - (아) 훈련된 사람을 위한 다음의 정보
    - ① 적용 및 사용제한(예 온도범위)에 관한 사항
    - ② 착용자가 착용 전 수행해야 할 시험(Test)
    - ③ 의복부속품(Fitting)
    - ④ 사용법
    - ⑤ 유지 및 관리
    - ⑥ 보관
- (2) (가)에서 (아)에 관련된 일부 정보는 의복 라벨로 인쇄하여야 한다.

# 5.2 보호의의 사용

(1) 정확한 보호의를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스

## P - 117 - 2012

템의 절차대로 보호의의 사용을 관리하여야 한다.

- (2) 한계사용 의복은 오염되면 항상 폐기하여야 한다.
- (3) 보호의를 벗을 때에는 필요하다면 조력자의 도움을 받되 다른 사람의 오염의 가능성을 극소화하는 순서로 벗도록 한다. 이때,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가 도움이 될 수 있다.
  - (가) 보호의를 벗기 전에 옷, 장갑, 양말의 외부를 진공흡입, 샤워, 쓸어내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오염을 줄인다.
  - (나) 오염의 봉쇄는 오염을 제거할 때 옷의 내면이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탈의함으로써 증진될 수 있다.
  - (다) 오염된 의복을 처리할 때에는 호흡용보호장구의 사용을 고려한다.
  - (라) 오염된 의복을 폐기할 때에는 밀폐된 용기에 오염된 의복을 넣어 지정된 장소에 두어야 한다.
- (4) 보호의는 음료수, 화장품이 있는 곳이나 흡연 장소에서 착용해서는 안 된다.
- (5) 근로자는 보호의를 사용한 후 최소한 손과 얼굴을 씻고 화학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장소로 이동할 때까지 빈틈없는 개인위생을 지켜야 하고, 오염된 보호의를 입었거 나 주변에 놓아둔 채 흡연, 취식, 음료수 섭취 또는 화장품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화장실을 이용해서도 안 된다.

#### 5.3 교육·훈련

- (1) 모든 근로자는 관련 안전 절차를 충분히 알아야 한다.
- (2) 모든 근로자는 보호의를 착용해야 하는 이유, 보호의의 기능 및 한계에 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정확하게 알고 철저하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3) 착용자 및 관리자는 보호의의 효율성은 착용자의 사용책임 및 정보에 달려있음을 알아야 한다.
- (4) 착용자는 제공된 보호의를 사용하고 착용하는 정확한 방법에 대하여 훈련을 받아 야 한다. 그리고 그러한 훈련은 제조자의 적절한 조언과 그들의 특정한 작업현장 또는 환경과 관련한 특정한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#### P - 117 - 2012

- (5) 교육·훈련은 착용자, 공정 및 환경에 포함된 다른 사람(착용 보조자, 세탁 및 유지 관리 스텝)에게 오염의 확산가능성을 극소화 하도록 설계된 보호의의 사용 및 제거 방법에 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- (6) 이 훈련은 보호의가 낡아서 기계적 손상을 가져올 때 의복이 인체 보호에 필요한 보호장구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.
- (7) 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청정 보호의와 오염된 보호의 사이에 오염의 확산을 피하기 위한 제거절차를 마련하여 지정된 절차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, 보호의의 결함을 파악하는 방법과 결함을 발견했을 때 적절한 보고에 관한 사항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8) 작업자는 화학물질의 용기에 관한 경고와 권장사항을 읽고 관찰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,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작업에 관해 산안법 등 법규에서 요구하는 위험성평가방법을 알아야 한다.
- (9) 관리자를 포함한 관련 직원에 대한 훈련은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.
- (10) 훈련은 정상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과 비상 훈련에 이르기까지 정규적인 무예고 점검에 의하여 감시 및 강화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(11) 모든 훈련은 주기를 정하여 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12) 모든 훈련은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.

# 5.4 유지 및 사용기록

#### 5.4.1 오염된 의복

- (1) 재사용할 수 있는 보호의가 화학물질에 오염되어 있다면 폐기를 고려해야 한다. 이때 보호의가 탈오염이 가능한지를 제조자에게서 자문을 받도록 한다.
- (2) 사용이 제한된 한계수명 보호의가 화학물질에 오염되었을 때에는 필히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. 오염된 보호의를 안전하게 폐기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#### 5.4.2 세정

#### P - 117 - 2012

- (1) 보호의의 외부에 때나 오물이 묻었을 때에는 세정하여 제거하여야 한다.
- (2) 한계수명 의복은 화학적으로 오염되지 않았고 세정에 대한 정절한 표시가 있다면 한 회에 한하여 재사용을 위하여 세정할 수 있다. 이때 세정제는 보호의 제조자가 승인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3) 화학 보호의를 세정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제조자의 권장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의복이 접촉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.

# 5.4.3 수선(Repair)

의복은 세정 후 손상되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. 손상이 발견되면 제조자의 설명서에 따라 수선하거나 제조자에게 수선을 의뢰하여야 한다.

#### 5.4.4 사용기록

- (1) 의복을 사용할 때에는 그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적절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.
  - (가) 보호의 명세
  - (나) 구매 및 배포날짜
  - (다) 검사 및 시험 기록
  - (라) 세정 및 탈 오염 기록
- (2) 사용기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.
  - (가) 사용 일자
  - (나) 화학물질(위험원원)과의 접촉 또는 노출
  - (다) 착용자 성명
- (3) 최종폐기 일자와 이유를 기록할 때에는 한계수명 의복의 관리를 위하여 수정보완이 쉬운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.